

# 시티씨엘 1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문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제출 방법	건보주택 방문 접수
수신처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7(대표번호 032-831-1141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• <b>기한 내에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건보주택으로 방문해 주시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</li> <li>•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

※ [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]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 제출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생애 최초 특별 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	○	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건보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직계존속	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분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 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 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·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	
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	
○		기타서류	본인 및 세대원	자격요건이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무주택여부 등)	
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 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만 19세 이상 세대 원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위임장	본인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"무주택자"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면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
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생애최초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130% 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
생애최초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130% 초과 ~ 160% 이하	7,839,209원 ~ 9,648,256원	9,222,468원 ~ 11,350,728원	9,222,468원 ~ 11,350,728원	9,611,742원 ~ 11,829,835원	10,111,431원 ~ 12,444,837원	10,611,120원 ~ 13,059,838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\* (N-8),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인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■ 생애최초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]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.	①, ② 해당직장
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	①, 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①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반드시 제출	① 세무서
신규사업자 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	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(국민연금공단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
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 해당직장 / 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.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.	① 견본주택비치

- 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■ 생애최초 소득증빙 서류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 / 세무서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	
	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/ 세무서

- 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